

다.

나. 그 후 피고는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단서규정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유흥주점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흥주점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2013. 11월에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종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74,126,590원(가산세포함), 농특세 34,077,890원(가산세 포함) 합계 408,204,480원을 부과고지 하였습니다.

다. 원고는 쟁점부동산을 호텔 객실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당초 임차인들과의 분쟁 및 무단으로 변경한 시설물 존재 등으로 인하여 용도변경 및 그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지 못 하였고 유흥주점으로 사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호텔 영업정지 개시일인 2013.09.09.부터는 사실상 영업이 종료 되었으며, 또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은 단란주점을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 간주하고 유흥주점 면적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3.12.20. 서울특별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4.02.27. “기각” 결정, 2014.06.0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5.02.05. “기각”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5.05.07.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 응소사유

가. 원고는 쟁점부동산을 호텔 객실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당초 임차인들과의 분쟁 및 무단으로 변경한 시설물 존재 등으로 인하여 용도변경 및 그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지 못 하였고 유흥주점으로 사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호텔 영업정지 개시일인 2013.09.09.부터는 사실상 영업이 종료 되었으며, 또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은 단란주점을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 간주하고 유흥주점 면적에 포함시켜 취득세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 원고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에게 쟁점 부동산을 명도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취득일부터 30일이 훨씬 도과한 시점인 2013.11.11. 및 2013.11.20.에서야 *****를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 처분 신청과 건물명도의 소를 법원에 제기한 점, 위 가처분 결정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에게 사용하게 한 점, 2014.1.21. 위 건물명도의 소를 취하한 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나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측 건축과에 용도변경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 쟁점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어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단서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하였지만 종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고급오락장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 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경우에만 종과세를 제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그 점유자가 인도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착공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 고급오락장 종과세 규정을 법문과 달리 해석·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3.16. 선고 2010두2586 심리불속행 판결, 원심 대전고등법원 2009.12.24. 선고 2009누2236 판결 참조) 할 것이다. 또한 위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라고 함은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를 하거나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만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4다58901판결 등 다수 참조)인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되도록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유흥시설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고,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만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종과세율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 또한 쟁점부동산에는 건축물대장상 일부 단란주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단란주점부분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는 2010.7.8. 자진폐업되었고, 단란주점을 유흥주점으로 변경하여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현장조사,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조사복명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보를 통하여 확인된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별첨: 불법건축물 현장보고, 부동산전대차계약서, 2013년도 조사복명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보 등)

나.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는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응소하고자 합니다.

